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3호

빅테크기업 독점규제에 관하여

"본 뉴스레터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규제 리포트'와 경쟁법 전문가이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신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리포트

빅테크기업 독점규제 글로벌 동향 리포트 -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1. 들어가며

- 첨단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거대 IT기업, 이른바 "빅테크기업(Big-Tech)"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대다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빅테크기업** : 온라인 플랫폼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月 이용자 수 5천만 명 이상, ▲年 매출 6천억 달러 이상인 기술 기반 산업체로, 구글·아마존·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네이버·카카오 등 해당

- 빅테크기업은 SNS·전자상거래·검색엔진·하드웨어·금융·통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성장하면서 현대인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지속하는 등 여러 독과점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 빅테크기업의 위 독과점 문제를 타개하고 향후 AI·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경쟁법 이슈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행정규제, ▲보완입법, ▲민·형사 제소 등 다각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미국·유럽·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독점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빅테크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해 현지 국가에 진출할 상황을 대비해 인지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의 규제 동향 : 경쟁당국에 의한 사법·행정 규제

- 독점규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美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각 소관 법률에 의거한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 우선 DOJ의 경우, 미국 최초 독점규제 성문법인 ‘셔먼법’ 및 후속 제정 법인 ‘클레이튼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행을 실시합니다.
 - DOJ는 주로 ‘사법적 집행방식(Judicial Enforcement)’을 채택해, 셔먼법 또는 클레이튼법 위반자를 상대로 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거나,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하여 대배심 등을 진행한 후 기소 및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한편 FTC의 경우,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 이외에도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른 의율을 진행하며 ▲사법적 집행방식으로는 ‘민사절차’만을 활용하는 대신, ▲‘행정적 집행방식(Administrative Enforcement)’, 즉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응되는 절차를 활용하며 행정규제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of 1890)

: 가격담합, 담합입찰, 시장분할 등 ‘비합리적 거래(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행위자에 관한 민·형사상 처벌규정을 담은 최초의 반독점법

▶ 클레이튼법(Clayton Antitrust act of 1914)

: 셔먼법에 의한 집행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입법안으로, 끼워팔기, 배타적거래, 기업결합 등에 관한 금지조항을 규정(단, 형사처벌조항 부존재)

▶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FTC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자, 독점규제 이외에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광고 표시 등을 금지하며 소비자보호관계 등을 규정한 법률

- DOJ와 FTC는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별·시장별로 사건을 배분하되(DOJ:금융·교통·방산, FTC:의약·에너지 등), 정기적 협의를 통해 조사 착수 前 ‘Clearance제도’를 통해 어느 사건을 누가 맡을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美DOJ·FTC의 최신 빅테크기업 독점행위 등 규제사례】

대상	당국	주요 사례 및 내용
구글	DOJ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구글이 ①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 통신사에 매년 약 100억 달러 지급 약정, ②이에 Bing, 덕덕고(DuckDuckgo) 등 타사 검색엔진들의 시장 진입을 부당 방해한 결과 검색엔진 시장점유율 90% 달성▶ (규제) '20. 10. DOJ가 구글의 소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정, '23. 9. 현재 절차 재개, 만일 구글 패소 시 ‘자산매각명령’ 등 조치 예상

아마존	F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매물을 눈에 띄게 배치해 주는 대가로 ①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배송 서비스 이용 강요, ②경쟁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에게 불이익 부과 ▶ (규제) '23. 9. FTC와 17개 주 법무장관이 아마존의 소위를 '독점적 지위 부당유지를 위한 불법행위'로 규정해 시애틀 연방법원에 고소장 접수, 만일 아마존 패소 시, '기업분할명령' 등 조치 예상
-----	-----	--

- 한편 위 DOJ·FTC 등 경쟁당국에 의한 규제 외에도, '21년 6월 美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주도'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패키지 법안을 상정('23년 폐기)했고, '24년 5월 현재 제118대 하원에서도 위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유럽의 규제 동향 : 「디지털 시장법」등에 의한 입법 규제

- 유럽연합은 빅테크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24년 3월부터「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전격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DMA는 기존 경쟁법규인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이 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규제방침만을 규정하여 기업·개인이 피해를 적시에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여,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입안되었습니다.
 - DMA는 복수의 유럽국가에서 활동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플랫폼 기업(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월 이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을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대표적으로 ①외부 앱(App) 및 대체 앱 설치 허용의무, ②타사 경쟁업체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제한 금지의무, ③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후 맞춤형 광고 활용 금지의무 등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年 매출 20% 상당 과징금, ▲최대 日 평균 매출 5% 상당 정기적 이행강제금, □사업체 일부매각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U 디지털 시장법(DMA) 주요 내용 정리】

게이트키퍼 목록	주요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벳(구글) • 아마존 • 애플 • 바이트댄스(틱톡) •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링크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 허용의무 ▶ 게이트키퍼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의무(자사우대 금지) ▶ 단말기 등에 내장된 앱 등의 임의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금지의무 ▶ 타겟팅 광고(맞춤형 광고) 목적 이용자의 동의 없는 타사 행태정보 등 외부 정보에 대한 추적행위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 시 예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 최대 20% ▶ 이행강제금 :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매일 정기 납부 ▶ 매각처분 : 조직적 위반혐의 적발 시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

■ 한편 '24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를 상대로 ▲ **自社 앱 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인앱결제)**, ▲ **그 앱에서 얻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한 점**에 대해 TFEU 및 DMA상 독점금지위반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대해 약 18억 유로(약 2조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애플은 '24년 5월 위 처분에 불복하며 EU 룩셈부르크 일반법원에 항소하였는바, 시행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로 적용된 DMA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그 외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및 맺음말

- 이외에도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경우,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을 각 인수하는 과정에서 M&A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24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한편 일본의 경우, 구글-애플 등의 빅테크기업이 제3자 하드웨어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24년 4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주요 선진국들이 위와 같이 빅테크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를 선보이는 현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 동향을 조속히 파악한 후 예기치 못한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①한국전자통신연구원 편찬『미국의 반독점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보고서, ②EU 디지털시장법 원문, ③'24. 3. 4. EU 집행위 애플 사건 영문 판결문을 본 게시물과 함께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각국의 빅테크 독점규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자_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황현준**